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4-168
----------	--------

제안년월일 : 2024. 11. 19.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이하 '수당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복무 조례와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복무 조례에 내용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수당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동훈
연 락 처	02-3153-616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